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9 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시설의 정기 휴관일을 축소해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그 밖의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 대상 시설 명칭을 구체화하고, 독락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실내시설의 정기 휴관일에서 매주 월요일을 제외함(안 제4조)
다. 기호서사의 시설별 사용료를 신설하고, 관련시설 대관시간을 축소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리·운영, 유지”를 “유지”로 한다.

나. 초려역사공원 내 갈산서원 및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

제4조제1항제1호 중 “매주 월요일, 1월 1일”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 초려역사공원 내 갈산서원

(단위: 원)

구 분	면적 (㎡)	기준금액
		시간당 사용료
갈산서원	119.25	2,400
몽재	51.30	1,600
도산재	51.30	1,600
앞마당	257.15	2,800

○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

(단위: 원)

구 분	면적 (㎡)	기준금액
		시간당 사용료
강당	81	1,600
동재	40.5	1,200
서재	40.5	1,200
앞마당	252	2700

※ 대관시간: 09시 ~ 18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30.>

사 용 (변 경)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및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FAX
사 용 시 설	시 설 명				
	사용장비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참 여 인 원					
변 경 사 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13.>

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table>
<tr><td>사용자
(단체)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FAX</td></tr>
<tr><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사용허가
신청내용</td><td>시설 명</td><td colspan="3"></td></tr>
<tr><td>사용장비</td><td colspan="3"></td></tr>
<tr><td>사용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td></tr>
<tr><td>사용료
납부액</td><td colspan="3"></td></tr>
<tr><td>반환신청
사유</td><td colspan="4"></td></tr>
<tr><td>입금계좌</td><td colspan="4">은 행 명: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td></tr>
<tr><td colspan="5">「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초려역사공원 다. (생 략) 2.·3. (생 략) 4. “관리·운영”이란 시설의 관리·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홍보 및 행사 업무 등 시설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초려역사공원 내 갈산서원 및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 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 유지 ----------.
제4조(개방 및 휴관) ① 야외공원이나 야외시설은 매일 개방 및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물 등 실내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생 략) ② (생 략)	제4조(개방 및 휴관) ① ----------. ----------. 1. 1월 1일----------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효 숙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5. 4. 9.] [조례 제2742호, 2025. 4. 9.,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문화유산과(문화유산과) 044-300-4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시 지정유산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국가유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나. 초려역사공원

 다.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홍보·연구·전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보존시설 또는 교육관 등<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2. “부대시설”이란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마당, 체험시설, 전기·통신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등 국가유산 등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 및 체험시설 모두를 말한다.<개정, 2025. 4. 9.>
3. “사용”이란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일정 시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4. “관리·운영”이란 시설의 관리·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홍보 및 행사 업무 등 시설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관리·운영 등)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개방 및 휴관) ① 야외공원이나 야외시설은 매일 개방 및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물 등 실내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1주일 전에 시설의 게시판 또는 시민의 접근이 쉬운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객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국가유산을 만지는 등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
3. 흉기 등 위험물을 가지고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고성방가, 취사행위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시작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의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7조(사용료)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4. 9.]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교육, 전시 및 공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대상자 및 감경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따른다.<개정, 2020. 7. 1

5.><개정, 2025. 4. 9.>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13.]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 4. 9.>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4. 9.>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3조(위탁관리) ① 수탁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탁 사무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제3조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4. 9.>

1. 위탁 목적
2.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위탁기간
4. 위탁사무 및 내용
5. 관리책임
6. 그 밖에 시설의 보호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과 관계없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파산,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했던 시 소유의 장비<개정, 2025. 4. 9.>
2. 시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구입·사용했던 장비 등<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7조 <삭제, 2020.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 7. 15.><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97호, 2020. 12. 18.>

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 제7조 (생 략)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48호, 2024. 12. 13.>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